

#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중소벤처기업부 「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(안)」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및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보호,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5조, 제6조)

- (삭제) 「전통시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인조직
- (변경) 상인조직 대표자 →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

나.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1호)

- 기준 : 2,000m<sup>2</sup> 이내 밀집된 소상공인 점포 수
  - (당초) 25개(상업지역 외 20개) 이상 → (변경) 15개 이상(공용 면적 제외)

다. 용어 정비(안 제5조, 제14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며, 상업 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”를 “15개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,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상인조직 대표자”를 “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보”를 “구미시보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인조직의 대표자”를 “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단서 중 “밖에”를 “밖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6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)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, 심의 안건 등을 위원

자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구미시보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)

-----

-----

----- 상인 혹은 상인조직

의 대표자-----

-----

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·② (현

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

-----

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 
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 
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
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 
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  
릴 수 있다.

④ · ⑤ (생략)

-----.  
-----  
-- 밖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# 관계법령

##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1. ~ 2. (생략)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3. ~ 13. (생략)

##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희
	팀 장	이 경 자
	담 당 자	최 서 영 (480-2622)